

문서 등록 인

문서번호: 산부인과- 1970

등록일자: 2019. 11. 2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 |
|------------------|-------------|
| 총장 | 지사 |
| 전일자 2019. 11. 26 | 부총장 남다나우 장남 |
| 수번호 11671 | 제세처장 전경 |
| 처리 과학 협력공무팀 | 팀장 이태희 |
| 담당자 이태희 | 담당 오윤석 |

수신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0년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공모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3. 우수한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재 등 홍보를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공고내용: 2020년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 신청기간: 2019. 11. 25. (월) ~ 12. 2. (월) 17:00 까지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http://rnd.mfds.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세부사항
 - 붙임의 재공고문 및 첨부자료 참조
-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ni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 (<http://rnd.mfds.go.kr>)

붙임 1. 2020년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문
 2. 2020년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첨부자료. 끝.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인정인



수신자 전국대학교 외 1

전문연구원 기안11/25 주무관 검토11/25 보건연구관 검토11/25 연구관리T/F 전결11/25
황옥자 허지연 서자우 팀장 김희성

협조자

시행 연구기획조정과-9701 (2019-11-25) 접수 상명-2019-11671 (2019-11-26)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 / www.nifds.go.kr
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화번호 043-719-6104 팩스번호 043-719-6100 / ghkddhrwk@korea.kr / 공개

□ 추진목적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45호)
제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자,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공모 개요

□ 사업명

- 식품 등 안전관리 (17과제)
- 의약품 등 안전관리 (19과제)
-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8과제)
-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10과제)
- 농축수산 안전관리 (8과제)

○ 식품 등 안전관리

- 식품 전 단계(food chain)의 위해요소 안전성 평가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식품 등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화함으로써 국민 안전·안심 및 먹을거리 신뢰도 제고
- 의약품 등 안전관리
 - 의약품 등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등의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한 심사·평가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안심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제고
-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선제적 정책지원·국제조화된 제도 마련, 기준 규격 과학화·허가지원에 관한 평가기술 개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개별 의료기기 등의 신속한 허가지원을 위한 평가기술 개발
-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독성·악리·임상 및 첨단분석기술·실험동물·대체시험법 등 안전성 예측·평가 기반 기술 확립
- 농축수산 안전관리
 - 농축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검사기술 개발과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한 식생활 보장

□ 공모 대상과제

- 공모 형태: 일반공모(RFP지정공모)

- 공모 분야

| 세부사업명 | 공고 과제 수 | | | 연구개발비 (백만원) | |
|---------------|---------|----|----|----------------|--------|
| | 총계 | 단년 | 2년 | | |
| 식품 등 안전관리 | 17 | 9 | 6 | 2 | 5,400 |
| 의약품 등 안전관리 | 19 | 8 | 9 | 2 | 3,082 |
|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 8 | 7 | - | 1 | 1,020 |
|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 10 | 4 | 3 | 3 | 1,810 |
| 농축수산 안전관리 | 8 | 2 | 3 | 3 | 1,600 |
| 합 계 | 62 | 30 | 21 | 11 | 12,912 |

※ 예산상황,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추진목록 및 연구과제제안서(RFP) 세부내용은 [첨부1, 2] 참조

□ 공고 및 신청 기간

- 공고 및 신청기간: 2019. 11. 25.(월) ~ 12. 2.(월), 17:00까지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에서 신청 [첨부 3] 참고
- ※ 인쇄본 출력, 방문(우편)제출 없이 온라인 접수완결

2 신청 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제2항)
 - 1) 국공립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3)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 7)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5)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 6)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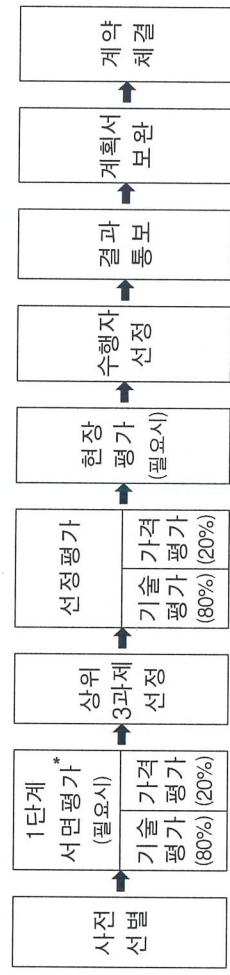
○ 과제신청 및 참여 제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 관련
1) 연구책임자로서 3과제를 초과하여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세부
연구과제 포함)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 * 잔여연구기간 인정 :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될 때에는
해당과제를 참여체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정책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체한 후 참여체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신청일 기준
 - 3) 해당연구과제의 당해연도 연구기간 중 계속하여 연구를 수행하거나
이려울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연구책임자
 - 4) 연구계획서를 제출 후 신청 및 참여체한에 대해 사전선별을 실시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어려울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선정 절차 및 일정

선정 절차

○ 발표평가/가격평가



* 1단계 서면평가의 경우 접수 결과 과제경쟁률이 4:1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실시함

선정 일정

| 내용 | 일정 |
|----------------|-----------------------------|
| 1단계 서면평가 | 2019년 12월 18일(수)~19(목) (예정) |
| 1단계 서면평가 결과 통보 | 2019년 12월 20일(금) (예정) |
| 선정평가 | 2020년 1월 6일(월)~17(금) (예정) |
| 선정결과 통보 | 2020년 1월 21일(화) (예정) |
| 계약 체결 | 2020년 1월 28일(화)~31(금) (예정) |
| 연구시작일 | 2020년 2월 1일(토) (예정) |

* 공모공고 접수 결과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방법

○ SMS 문자서비스,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서정방법

기술평론

□ 사전선별: 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

- 공고 후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공고 내용의 충족 여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유무,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체도 준수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체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기준 준수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유사·중복성 검토 등을 통하여 공고사항에 부합하는 선정평가 대상과제 결정
 - 사전검토 후 결격사유가 보완되지 않거나 연구기관·연구책임자·자격 부적합, 신청서류 누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체한 해당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연구자 기본정보, 과제수행 이력, 선정평가 감점 항목, 참여체한 등 NTIS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는 연구자에게 별도 요구 없이 NTIS 정보를 직접 활용하여 사전 검토

선정평가 기준

- C 천정평가는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로 실시하며,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점수가 총점의 85% 미만일 경우 탈락으로 처리

C 기술평가에서는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 타당성, 연구성과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대 평가방식으로 평가

○ 1단계 서면평가(필요)

- 발표평가 과제의 경우 경쟁률 4대 1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3과제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
 - 1단계 서면평가가 시 해당과제의 가격평가를 실시하며 가격평기에 불참하거나, 기술평가 점수가 총점의 85% 미만인 경우 1단계 서면 평가에서 탈락

| 구분 | RFP 설명(주관부서) | 발표 | 질의응답 |
|--------|--------------|-----|------|
| 40분 평가 | 5분 | 20분 | 15분 |

가격평균

- 공고된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가격평가를 실시
 - 발표평가 대상과제의 경우, 발표평가 후 가격평가를 실시
 - 현장평가 [필요시]
 - 대형과제(연구개발비 3억 이상의 시험연구) 또는 주관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탈락 여부를 결정

- 7 -

□ 선정평가 시기·감점 기준1)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구분 | 가감 점수 | 적용 기간 | 적용대상 | 비고 |
|-------------------------|-------|---------------------|-----------------------------------------------------------------------------------------------------------|-------------------------------------------------------------|
| 최종평가 최우수등급 연구자 가점 | 0.5 | 연구 종료일 로부터 2년 | 최종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포상 가점 | 0.3 | 1회 | 최근 3년 이내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국기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9항에 따른 포상 | ※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자 증가로 등록수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외부제안자 가점 | 0.3 | 1회 | 수행자 선정평가 시 본인이 제안한 과제 (수정·보완하여 공고된 과제 포함)에 응모하는 경우 | |
| 계약포기 감점 | 2 | 2년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계약포기 경력이 있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
| 결과평가에 따른 미조치 감점 | 2 | 2년 | 최종평가 후 평가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미제출한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

* 가점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기준으로 적용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가점 또는 감점이 중복된 경우 높은 점수를 적용하고 가점과 감점이 중복된 경우 각각의 점수를 적용함
*** 가점은 선정평가 최종단계에 적용함

- 1) 서품의 약품안전처 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
- 2) : 용역연구개발과제의 가감점 기준·방법

□ 신청서류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 방법: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md.mfds.go.kr)에 접속하여 접수 | | |
|-------------------------------------------------------------|------------------------------|--------------------------------------------------------------------------------------------------------------------------------------------|
| ○ 접수원료까지 놀려야 과제신청이 완료됩니다. | | |
| ○ 기간: 2019. 11. 25.(월)~12. 2.(월) 17:00 * | 공고기간 동안 24시간 신청 가능 | |
| ※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자 증가로 등록수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출서류 | | |
| 번호 | 제출서류 목록 | 서식 및 등록방법 |
| 1 | 용역연구개발과제 희석 연구내용 | 사용서식: [첨부 4] 기본정보 화면에서 '연구내용' 부분에 등록 연구내용 중 개인/기관정보를 포함할 수 없음 |
| 2 | 평가용 용역연구개발과제 희석 | [첨부 4] 등록 및 저장 후 [평가용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 업로드 평가용 계획서에는 주관(협동)연구책임자, 주관(협동)연구기관, 참여연구원, 자문단 등 식별 가능한 개인/기관정보를 반드시 삭제 |
| 3 | 제출용 용역연구개발과제 희석 | [첨부 4] 등록 및 저장 후 [제출용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 업로드 |
| 4 | 발표자료 | 사용서식: [첨부 5]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권장 |
| 5 |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 연구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스캔하여 등록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수신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팀 |
| 6 | 가·감점 평가서 및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사용서식: [첨부 14] |

* 상세한 과제신청 및 제출서류 등록 방법은 [첨부 3.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고

□ 가격입찰 관련 제출서류: 선정평가 당일 제출

- 1)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 2)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또는 입찰보증금
- 3)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가격입찰서류 관련 안내>

- 공고 첨부자료 [첨부6. 가격입찰서 작성안내] 참조
- 가격입찰서의 연구비는 입찰가를 기재
- 가격입찰 기준금액은 RFP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금액 이하로만 입찰 가능
- 가격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구비로 계약을 체결함
-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항의 입찰보증금 3)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국기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지금각서로 제출 가능
- 가격평가 제출서류는 추후 공지되는 선정평가 일자에 제출하며, 제출 시 작성 및 밀봉 방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이 불가하고 신청이 취소됨

6 유의사항

[공통]

- 신청자는 공고문 및 첨부자료에 기재된 과제신청 내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신청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선정평가 방법 및 일정 미획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과제가 재공고되더라도 공고 시 과제를 기신청한 경우 같은 과제의 재신청은 불필요합니다.
 - 제공고 대상과제는 미응모 및 단일응모 과제임

[계획서 작성]

- 과제명 및 연구비, 연구기간은 제시된 과제제안서(RFP)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변경 불가
- 연구개발비는 첨부 9.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 평가용 계획서의 연구내용 중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자문단 등의 이름이나 소속 및 이를 암시하는 개인/기관정보를 반드시 삭제
※ 동 사항 불이행시 서류신청이 불가할 수 있고,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허위사실로 작성된 신청서류가 발견될 경우, 선정평가 결과 발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됩니다.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를 모두 첨부하고 저장한 후 '접수완료'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에는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 변경이 가능하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2019. 12. 2.(월), 17:00까지)

7 기타 참고사항

- 신청마감일에는 연구관리시스템의 접속자가 많아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 관련 정보의 변경(기관명, 법인번호 등) 또는 신규 기관등록이 필요한 경우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변경 및 기관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 공고 신청절차 개선사항 반영(2019. 7.)
 - (변경 전)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 (개선 후) 온라인 신청으로 일원화
 - * 인쇄본(종이문서) 출력·제출 폐지

8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 입찰보증금

-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3.'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3.'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 가)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협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체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다) 각 중앙판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① 충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 ② 충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 ③ 충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 ④ 충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입찰 무효사항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릅니다.

○ 기타 입찰관련 유의사항

- 1) 정부의 조치나 우리기관의 환경변화로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 계속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연구비만 확정이고, 차년도 연구비는 연차 실적·계획에 대한 중간평가 및 정부 예산 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3) 입찰참가자는 관련규정 및 지침,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속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별지서식 및 첨부파일 목록

□ 첨부파일 목록

- [첨부1] 용역연구개발과제 공모 공고 과제 목록
- [첨부2] 연구과제 제안서(RFP)
- [첨부3]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메뉴얼
- [첨부4]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연구내용) 양식
- [첨부5] 용역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발표자료 양식
- [첨부6] 가격입찰서 작성안내
- [첨부7]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45호)
- [첨부8]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
- [첨부9]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
- [첨부10] 「2020년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원별 인건비 산정기준」
- [첨부11]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윤리지침」
- [첨부12]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노트관리지침」
- [첨부13]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계상시 주의사항」
- [첨부14] 가·감점 평가서 양식

<문의처>

- 공고 및 선정평가 관련 문의: 연구관리TF팀 043)719-6104, 6103, 6108, 6112
- 온라인신청 시스템오류 관련 문의: 연구관리시스템 담당 043)719-6105, 4199